

##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. 12. 22 조례 제270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·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,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디지털성범죄”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, 배포,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.
2. “디지털 성착취물”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·편집·가공된 비동의 성(性)적 영상을 말한다.
3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·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·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

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

2.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
  3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4.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경찰,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
2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
3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